

오산시 자치법규안 예고

「오산시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1년 5월 28일

오산시의회의장

오산시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[성길용 의원 대표발의]

1. 제안이유

-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된 특수성이 있으므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설치 목적에 맞는 “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노동 관련 단체”를 수탁기관에 명시해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가. 근로자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복지공단 또는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노동 관련 단체 등 비영리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0조제1항).

3. 조례안 : 붙임

4. 의견제출

- 제출기일 : 2021년 6월 3일까지
- 제출방법 : 서면, 우편,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
- 기재내용 : 주소, 성명, 연락전화번호, 의견
- 제출기관 : 오산시의회(전문위원실)
 - 우편번호 : 447-701
 - 주 소 : 오산시 성호대로 141(오산동, 오산시의회)
 - 전 화 : 031)8036-8023, · 팩 스 : 031)375-2875
 - 전자메일 : pk1121@korea.kr

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

조 례 명 : 오산시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
조례안

의견제출자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례안 내용	찬 성 여 부		의 건	비 고
	찬성	반대		

오산시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성길용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제8-512호
----------	---------

발의년월일 : 2021년 5월 27일

발의의원 : 성길용, 한은경 의원

찬성의원 : 장인수, 김영희 의원

□ 제안이유

-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된 특수성이 있으므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설치 목적에 맞는 “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노동 관련 단체”를 수탁기관에 명시해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가. 근로자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복지공단 또는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노동 관련 단체 등 비영리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0조제1항).

□ 참고사항

- 관계법령발췌서
 - 「근로복지기본법」 제28조, 제29조

오산시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오산시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「근로복지기본법」 제29조제1항에 따라 공단 또는”을 “근로복지공단 또는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노동 관련 단체 등”으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복지관 운영위탁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복지관 운영의 위탁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0조(운영위탁) ① 시장은 복지관을 직접 관리 운영하되, 그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「근로복지기본법」 제29조제1항에 따라 <u>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	<p>제10조(운영위탁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근로복지공단 또는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노동관련 단체 등</u> ----- -.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

【별첨】

관계법령 발췌서

제28조(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(이하 "근로복지시설"이라 한다)의 설치·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근로복지시설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사업주에게 이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.

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(사업주단체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·노동조합(지부·분회 등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이 근로복지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4. 17.>

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복지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·사업주·노동조합·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4. 17.>

제29조(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근로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